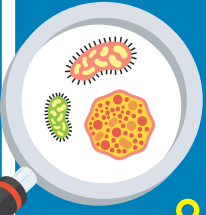


검사명령

2019년 9월 30일부터



검사명령제란?



○ 조개젓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자는 공인 시험·검사기관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 검출되지 않은 제품만 유통·판매 가능합니다.

* (법적근거)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17조(검사명령), 「식품위생법」 제19조의 4(검사명령)

○ 검사는 17개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능합니다.

식약처 검사명령으로 판매 허용된 안전한 조개젓 제품은 **식약처 홈페이지 > 알림 > 공지**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.

소비자가 마트, 시장 등에서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검사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검사명령 위반업체는 매건당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
A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

1. 원료로 사용하는 조개젓(바지락살 포함) 안전성 확인하기
※ 식약처 홈페이지 부적합 이력 또는 검사성적서 확인
2. 음식 취급 전,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
3. 종사자에 대한 A형 간염 예방접종 하기
4. 유전자 검사 후 안전한 제품만 유통·판매하기

